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0. 28.

경제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 출 자: 달서구청장(안전도시과)
- 제출일자: 2020. 10. 16.
- 회부일자: 2020. 10. 16.
- 상정 및 의결: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(2020. 10. 28.)

## 2. 개정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74조(재난관리기금의 용도)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여 각종 재난상황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을 규정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(2020.1.7.개정, 2020.4.8.시행)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함(안 제33조)
  - 시행령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항목 외에는 달서구가 수행하는 공공 분야 재난관리활동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
  -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함(안 제36조)

#### 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계법령
 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, 제31조, 제40조~제42조
 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32조, 제74조
  -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
  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
 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
-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##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(전문위원 전역희)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확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74조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범위에서 기금 사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시행령 개정으로 근거가 없어진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임대주택 이주지원비의 근거를 마련함
-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하여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만큼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

6. 질의 및 답변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토론요지: 특이사항 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